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
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립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및 국립특수학교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교육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22.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1) 중 별표 중 총계 “26,629”를 “26,582”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37”를 “6,087”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055”을 “6,005”로 한다. 교육공무원 계 “20,465”를 “20,468”으로 하고, 교육전문직 계 “18”을 “21”으로 하고, 교육연구사 계 “11”을 “14”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3명, 학예연구사 1명, 보건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629</u>	<u>26,582</u>	-47
·	·	·	
·	·	·	
교육공무원 계	<u>20,465</u>	<u>20,468</u>	+3
·	·	·	
교육전문직 계	<u>18</u>	<u>21</u>	+3
·	·	·	
교육연구사	<u>11</u>	<u>14</u>	+3
·	·	·	
일반직 계	<u>6,137</u>	<u>6,087</u>	-50
3급 또는 4급 이하	<u>6,055</u>	<u>6,005</u>	-50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08